



## 화상심리 규약에 대한

### 체크리스트

및

## 화상심리의 개최에 대한

### 사이버 규약과 절차명령의

### 예시 조항

해당 문서는 별첨 1. 화상심리 규약에 대한 체크리스트(이하 “체크리스트”)와 별첨 2. 화상심리의 개최에 대한 사이버 규약과 절차명령의 예시조항(이하 “사이버 프로토콜”)을 담고 있습니다.

위 별첨은 본래 2020. 4. 9.자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조치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지침서’의 일부를 구성하였으나, 위 지침서에 제공된 화상심리에 대한 지침은 현재 2021. 1. 1.자 ICC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진행에 관한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 지침서’의 VII(C)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부록 I

### 화상심리 규약을 위한 체크리스트

#### A - 기일 전 계획, 범위 및 세부 실행사항

- (i) 심리 안건이 되어야만 하는 핵심 쟁점과 “서면으로만(documents only)” 다뤄질 수 있는 쟁점의 구분 및 판별;
- (ii) 참가자들(중재인, 당사자, 법률대리인, 증인, 전문가, 행정비서, 통역사, 속기사, 기술자 등)의 수와 명단에 합의;
- (iii) 화상 방 당 참가자 수 및 모든 참가 방에 360도 회전 뷰가 필수적이거나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합의;
- (iv) 중재인들 간에, 그리고 각 당사자 측에서 심리 도중 자신들끼리 상의하는 것을 허용하는 화상 방에 관한 합의;
- (v) 모든 로그인 위치와 접속지점 확인;
- (vi) 화상회의 개시 시점에 각 화상 방에 출석한 개인들의 신원을 확인할 것에 대한 합의; 및
- (vii) 상기 관점에서, 상이한 시간대들을 고려하여 심리기일 일정, 소요시간 및 일일 일정표에 관하여 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 간 협의 및 합의.

#### B - 기술적 이슈, 사양, 요건 및 지원 담당 직원

- (i) 다음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 간 협의:
  - 선호하는 플랫폼 및 기술(그러한 플랫폼과 기술에 대한 합법적 접근을 포함);
  - 각 장소에서의 순조로운 접속(음성 및 영상), 충분한 가시성과 조명을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 사양 및 기술적 요건;
  - 각 장소에서 특정 장비(전화기, 예비용 컴퓨터, 접속신호를 강화/확장하기 위한 장비, 당사자들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여타 장비 또는 시청각 보조기구)가 필요한지 여부;
- (ii) 선정된 플랫폼 및 기술의 호환성에 대한 예비 점검;
- (iii) 심리에서 사용될 기술,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및/또는 장비에 익숙하지 않은 참가자를 위한 사용지침서의 필요성 검토;
- (iv) 갑작스러운 기술적 장애, 접속차단, 전원차단의 경우 시행할 비상조치에 관한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 간의 협의(모든 참가자들을 위한 대체 소통채널 및 화상기술 지원); 및
- (v) 심리기일의 직전 달에 접속상태와 스트리밍을 점검하기 위해 최소 2회의 모의세션을 시행하며, 이때 마지막 세션은 심리기일 직전일에 실시하여 모든 면에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

### C - 비밀유지, 프라이버시 및 보안

- (i) 화상심리가 참가자들에게만 공개되고 비밀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 간 협의;
- (ii) 모든 참가자들을 구속하는 접속 및 비밀유지 관련 서약 내용에 합의;
- (iii)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 간 다음 사항에 관한 협의:
  - 화상심리의 녹화기록 여부(시청각적 기록, 기록의 비밀유지 및 음성/영상기록의 서면 속기록에 대비한 가치 등);
  - 특정 참가자들의 접근 또는 접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위 정보보호 요건 또는 표준의 유무; 및
  - 해킹, 불법 접속 등에 대비하여 화상심리의 무결성과 보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암호화 요건.

### D - 온라인 예절 및 적법절차 고려사항

- (i) 가상환경에서 참가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실무에 대한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 간의 협의.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됨: 주 발언자 지정, 변론의 방해 금지, 플랫폼과 대역폭의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이용 준수, 접속을 방해하거나 불법적 기록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사용 금지,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합의 등;
- (ii) 시험한 플랫폼과 기술이 당사자들이 시험한 상태대로 적합하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당사자/법률대리인으로부터 확보;
- (iii) 화상심리 진행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 확인, 또는 그러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화상심리 진행에 대한 법적 근거 확인; 및
- (iv) 화상심리 전 또는 화상심리 도중 기술적 문제에 있어서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당사자들에게 고지.

### E - 증거의 제출 및 증인과 전문가 신문

- (i) 구두변론의 준비 및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 간의 협의;
- (ii) 법률대리인이 온라인 변론 및 증거의 제출에 멀티스크린을 이용할 것인지 확인, 그리고 화상 환경에서 증거의 설명보조자료 제출 및 제시를 위한 방식에 합의;
- (iii) 증인 및 전문가 신문에 관한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 간의 협의(증인/전문가의 소환 및 신문 순서, 접속시각 및 참석시간, 화상 환경에서의 격리, 대화창 또는 비밀교신채널에서 증인/전문가 및 당사자/법률대리인 간 동시적 또는 비동시적 소통의 허용/금지, 온라인 환경에서 신문진행자와 증인/전문가 간의 상호작용 등); 및
- (iv) 화상 환경 내 속기록 및 화상 환경에서 필요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속기사와 통역사의 이용에 대한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 간의 협의.

## 부록 II

### 화상심리의 준비를 다루는 사이버 규약 및 절차명령을 위한 예시조항

#### I. 참가자들

“중재판정부는 (날짜 및 시간 기입)(으)로 예정된 심리가 화상회의로 진행될 것을 확인하고 명한다.

당사자들로부터 현재까지 제공받은 정보에 따르면, 다음 참가자들(“**심리참가자들**”)이 아래에 명시된 장소에서 심리에 참석한다:

- a. **신청인**  
(성명, 로그인 장소(들) 및 접속지점 기재)
- b. **신청인의 법률대리인**  
(성명, 로그인 장소(들) 및 접속지점 기재)
- c. **피신청인**  
(성명, 로그인 장소(들) 및 접속지점 기재)
- d. **피신청인의 법률대리인**  
(성명, 로그인 장소(들) 및 접속지점 기재)
- e. **중재판정부**  
(중재인들의 성명, 로그인 장소(들) 및 접속지점 기재)
- f. **증인 / 전문가 / 속기 업체 / 지원 담당 직원 및 기술자 / 기타 참가자(해당되는 경우)**  
(성명, 로그인 장소(들) 및 접속지점 기재)

각 심리참가자는 자신의 로그인 장소 또는 접속지점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모든 심리참가자들에게 이메일로 이를 통지한다.”

#### II. 기술적 이슈, 사양, 요건 및 지원 담당 직원

“당사자들은 모든 심리참가자들이 선정된 플랫폼을 통하여 심리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각 충분한 품질의 신뢰할 수 있는 비디오 링크 접속을 확보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서로 협의하여 본 절차명령일로부터\_일 이내에 상호 합의한 신뢰할 수 있는 화상회의 서비스 제공자들의 공동 목록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중재판정부는 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하기 전에 해당 목록에서 당사자들이 선호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관하여 당사자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본 절차명령일로부터\_일 이내에 다음에 관하여 협의하고 합의를 모색하여야 한다:

- (i) 계속적이고 원활한 시청각 접속을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 사양 및 기술적 요건(사용할

운영체제의 유형, 프로세서 속도, RAM 용량, 전송속도, 네트워크 대역 등);

- (ii) 심리에 필요한 하드웨어, 장비(디스플레이 스크린, 고해상도 웹캠, 소음제거 마이크론폰 또는 헤드폰, 전화기, 예비용 컴퓨터, 접속 신호를 강화/확장하기 위한 장비, 당사자들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여타 장비 또는 시청각 보조기구) 및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 (iii) 접속이 이루어지는 특정 장소와 관련하여 해당 장소에 고유한 요건.

상기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은 위 문단에 명시된 기간의 만료일로부터\_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각자의 제안과 각자가 주장하는 사양 및 요건이 선정된 화상회의 제공자/플랫폼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적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전달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의 각 제안은 본 절차명령 제\_호 부록 (1)로 첨부된 양식으로 중재판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공동 제안 또는 개별 제안을 검토하고 심리에 채택될 합리적 요건 및 기술 사양을 확인 또는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합리적 요건 및 사양을 결정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양 당사자가 각각 지명한 2인의 IT 전문가 또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의 비용으로) 지명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 전문가들은 중재판정부가 합리적 요건 및 사양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독립적, 객관적으로 중재판정부를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 후 동 IT 전문가들이 제공할 업무 및 지원내용을 기술한 필요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상기 사양 및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합의하거나 각자의 제안을 중재판정부에 전달할 때,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합리적 요건 및 사양이 (i) 선정된 제공자/플랫폼의 요건 및 (ii) 다른 모든 참가자들의 특정 장소에 고유한 요건과 양립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선정된 화상회의 서비스의 효과적,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튜토리얼 일정을 즉시 정하도록 한다. 당사자들은 화상회의 제공자/플랫폼 선정일로부터\_일 이내에 그러한 튜토리얼을 위한 일정을 중재판정부에 제안하여야 한다. 동 튜토리얼은 심리참가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기능 및 툴의 개요를 제공한다.

당사자들은 갑작스러운 기술적 장애, 접속차단, 전원차단, 또는 심리에 대한 기타 장애발생 시 시행할 세부 비상조치에 관하여 본 절차명령의 일자로부터\_일 이내에 협의 및 합의(하거나 별도 제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의 대표, 각 중재인 및 심리의 여타 심리참가자들은 (i) 심리에 채택된 장비 및 기술 요건이 제대로 작동하고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ii) 심리 직전 달에 심리 조건에 맞는 모의접속을 하기 위해 최소 2회의 시험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와 그러한 시험운영의 날짜, 시간 및 소요시간을 조율 및 합의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절차명령상의 의무 이행에 있어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지원 담당 직원을 사용하여야 함을 이해하고 합의한다.

상기 요건은 두 지점 간 화상회의, 다지점 간 화상회의, 웹 기반 화상회의, ISDN 연결 화상회의 등 사용되는 화상회의의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 III. 비밀유지, 프라이버시 및 보안

“원칙적으로, 심리의 출석은 본 절차명령 제\_호에 명시되어 있거나 그 조건에 의거한 심리참가자들로 제한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심리 진행을 돕기 위하여 심리참가자들과 협업하는 기술 컨설턴트/지원 담당 직원 또한 심리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되며 심리참가자들로 인식된다. 어떤 당사자가 심리 중 일부에 대해서라도 다른 자의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동 당사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그러한 참석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동 요청을 수락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심리의 여하한 부분도 녹화(음성 녹음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심리의 녹음은 공동 속기록 작성 목적으로 고용된 속기사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타 다른 녹음에 대한 제안은 늦어도 심리의 관련 부분이 진행되는 때로부터 48시간 전까지 요청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심리에 대한 공식 기록은 당사자들이 정정 및 검토 작업을 거친 서면 속기록으로 한다.

당사자들은 심리참가자들이 소재하는 장소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 중 프라이버시, 비밀유지, 정보보호 및 보안 요건과 관련하여 장애나 준법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심리기일 전에 충분한 기간(적어도 2주 전)을 두고 공동으로 이를 검토 및 제기할 책임을 진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 후 심리참가자들의 접근 또는 접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프라이버시 및 보안 요건 또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어느 당사자가 심리의 무결성을 확보하거나 사이버공격, 침투 또는 심리에 대한 무단 접근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그러한 우려를 할 만한 사유를 알게 되는 즉시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 후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떠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 IV. 온라인 예절 및 적법절차 고려사항

“화상회의를 통한 성공적인 심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협력과 조율의 정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심리참가자는 각각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 (i) 자신의 주 발언자 지정;
- (ii) 다른 발언자에 대한 방해 자제;
- (iii) 화상회의 설비의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사용;
- (iv) 접속을 방해하는 장비 사용 회피;
- (v) 무단 녹화/녹음 금지;
- (vi) 심리 도중 시간낭비 자제;
- (vii) 발언하지 않을 때에는 마이크로폰을 음소거 모드로 설정;
- (viii) 자신이 심리에 참가시키는 심리참가자들 또한 이와 동일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 및
- (ix) 심리의 절차적 효율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조치 또는 실무 채택.

중재판정부는 제1일차 심리기일 서두에서 행정사항을 논의하면서 당사자들과 협의 하에 이의제기의 방식을 확정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본 절차명령 일자로부터\_일 이내에 서면으로 (i) 당사자들이 상기 시험운영을 완료하였으며, (ii) 서비스 제공자, 장비, 기술 사양 및 요건이 심리 참여에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 V. 증거의 제시 및 증인과 전문가 신문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구두변론에서 증거의 설명보조자료 사용 및 기록상의 특정 증거의 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해당 증거의 설명보조자료가 모든 중재인, 상대방 당사자(들) 및 심리의 해당 부분에 참석하도록 승인받은 모든 심리참가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증거 및 설명보조자료의 제시에 멀티스크린이 요구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그러한 멀티스크린이 필수 장비 목록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본 절차명령 일자로부터\_일 이내에 다음 사항들에 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상호 조율하여야 한다:

- (i) 증인/전문가의 소환 및 신문 순서;
- (ii) 각 증인/전문가의 접속시각 및 참석 가능 시간;
- (iii) 증인/전문가의 화상 환경 내 거리를 위한 방식(해당되는 경우);
- (iv) 대화창 또는 비밀교신채널에서 증인/전문가 및 당사자/법률대리인 간 동시적 또는 비동시적 소통의 허용/금지;
- (v) 증인/전문가가 자신의 장소에서 타인과 동반 참석할 것인지 여부 및 증인/전문가가 진술하는 동안 타인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여부;

- (vi) 증인/전문가가 통역사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인지 여부, 해당 통역사가 화상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 통역이 동시 또는 순차로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 그리고 신문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정 추가 장비가 필요한지 여부.

상기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은 상기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_\_일 이내에 각자의 제안을 중재판정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공동 제안 또는 개별 제안을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린다.

당사자들은 심리가 서면기록되는 데에 동의하며, 당사자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속기록 내용을 즉각적으로 전달할 역량을 갖춘 화상 속기록 제공자/속기사를 공동으로 제안할 것을 약속한다. 속기록 이용에 추가적인 장비가 요구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동 추가 장비가 상기에 따라 확정된 필수 장비 목록에 포함될 것에 동의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증인/전문가가 'hot-tubbing' 방식의 신문에 출석하도록 당사자들과 합의하거나 당사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와 같이 합의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해당 증인/전문가가 'hot-tubbing' 방식 신문의 일정 및 시간 동안 동 신문에 충실히 참석하고 해당 절차가 중재판정부의 지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절차명령에 대한 부록

### 기술 요건

[당사자들과 추후 협의/합의 - 특정 사건용]

	당사자 xxx	당사자 yyy	제공자/플랫폼의 요건	중재판정부 결정
시스템 사양				
접속 요건				
하드웨어 및 장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기타 요건				